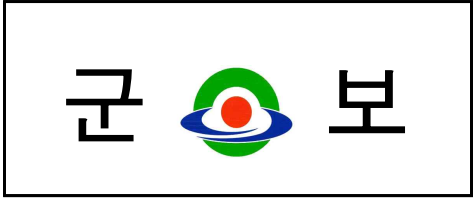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09호 2025. 4. 24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훈 령

- 예천군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규정(예천군 훈령 제469호)

고 시

- 2025년 예천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서 승인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5-52호)

공 고

- 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68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5년 4월 24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훈령 제469호

예천군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

예천군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중 “4. 중앙 및 도단위 각종 기관표창 수상자 표”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중앙			도		
	최우수(1위)	우수(2위)	장려(3위)	최우수(1위)	우수(2위)	장려(3위)
배 점	1.0점	0.5점	0.25점	0.5점	0.25점	없음

※ 당해부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수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담당자(팀장) 또는 부서장 중 1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1년 경과 후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 기관 표창 수상자가산점은 소멸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

- 기관 표창 수상 인사 가점 점수가 중앙 단위와 도 단위가 동일하여 차등 부여 하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- 중앙 및 도 단위 기관 표창 수상자 가점 변경(안 별표 2)

구 분	중앙			도		
	최우수	우수	장려	최우수	우수	장려
당 초	1.0점	0.5점	0.25점	1.0점	0.5점	0.25점
변 경	1.0점	0.5점	0.25점	0.5점	0.25점	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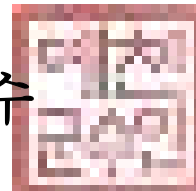
예천군 고시 제2025 - 52호

2025년 예천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2025년 예천군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「농어촌 정비법」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, 제82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4월 24일

예 천 군 수



1. 사업의 명칭 : 2025년 예천군 시군역량강화사업
2. 사업의 목적 : 지역 주도의 농촌 지역개발 추진과 지속가능한
지역사회의 역량향상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
3. 사 업 비 : 524백만원(국비 280, 도비 28, 군비 216)
4. 주요 사업내용
 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
 - 중심지 완료지구 활성화

- 기초거점 완료지구 활성화
- 완료지구 통합 프로그램

○ 지역 인적자원 육성

- 리더양성교육
- 리더통합교육

○ 공동체 활성화

- 마을 통합 공동체 동아리 프로그램
- 농촌활력학교 운영

5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
6. 사업시행기간 : 2025년(1년)

7. 문 의 처 : 예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(054-650-8267)

예천군청 농촌활력과 (054-650-7314)

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4일

예 천 군 수



1. 조 례 명 : 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 이유

- 행정안전부의 ‘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’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환지청산금 지급 방법 정비(안 제8조제4항)
 - 인감증명 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
 - 환지청산 지급부에 수령자의 자필 서명 확인 규정 마련

4. 개정조례(안) : 붙임참조

5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농촌활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기타

- 보내실 곳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농촌활력과
- 전화 : 054-650-6567, 팩스 : 054-650-7319
- 전자우편 : pth012@korea.kr

라.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www.ycg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사실확인서)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수령자의 자필서명 후 지급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